

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제64호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2004. 11. 29
제 출 자 사 천 시 장

1. 의결주문

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가 2004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어야 하나 기금의 지속적인 운용 등으로 이 조례의 지속적인 존치 필요성이 있어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한편,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유효기간(2004. 12. 31)을 삭제함
- 나. 회계공무원 관직의 업무담당별 용어를 수정함
 - 기금운용관 : 총무과장 ⇒ 체육업무담당과장
 - 기금출납원 : 체육담당주사 ⇒ 체육업무담당주사

4. 주요 토의과제 : 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담당관실
- 라. 기 타
 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 - 2) 입법예고(2004. 11. 2 ~ 2004. 11. 24)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중 “총무과장” 을 “체육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조
같은항제2호중 “체육담당주사” 를 “체육업무담당주사”로 한다.

조례 제375호(1999. 7. 5)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회계공무원) ①(생략)</p> <p>1. 기금운용관 : <u>총무과장</u></p> <p>2. 기금출납원 : <u>체육담당주사</u></p> <p>②(생략)</p> <p>부칙(조례 제375호, 1999.7.5)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	<p>제7조(-----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: <u>체육업무담당과장</u></p> <p>2. ----- : <u>체육업무담당주사</u>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-----</p> <p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

관 계 법 령 발 취

지방자치법

第9條 (地方自治團體의 事務範圍)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의 自治事務와 法令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속하는 事務를 처리한다.

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例示하면 다음 各號와 같다. 다만, 法律에 이와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5. 教育·體育·文化·藝術의 振興에 관한 事務

第15條 (條例)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그 事務에 관하여 條例를 制定할 수 있다. 다만, 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관한 사항이나 罰則을 정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.

第133條 (財産 및 基金의 設置) ①地方自治團體는 行政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또는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財産을 보유하거나, 特정한 資金의 運用을 위한 基金을 設置할 수 있다.

②第1項의 財産의 보유, 基金의 設置·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.

③第1項에서 "財産"이라 함은 現金외의 모든 財産的 價値가 있는 물건 및 權利를 말한다.

국민체육진흥법

第3條 (體育振興施策 및 勸■)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民體育振興에 관한 施策을 講究하고 國民의 自發的인 體育活動을 勸■·보호 및 育成하여야 한다.

第8條 (地方體育의 振興) ①地方自治團體는 地域住民의 건강과 體力增進을 위하여 건전한 體育活動을 生活化할 수 있도록 施設등 與件을 造成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②地方自治團體는 그 行政區域單位로 年 1회이상 體育大會를 직접 開催하거나 體育團體로 하여금 이를 開催하도록 支援하여야 한다.

③地方自治團體는 職場人體育大會를 年 1회이상 開催하여야 한다.